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2.6월)되어 기간통신사업자의 분할 또는 분할 합병에 대한 인가가 명문화되고 대포폰, 스미싱 이용 전화번호 및 범죄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이용중지(차단)가 가능해 짐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보편적 의무 제공사업자의 구리선 중복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내전화를 인터넷전화(VoIP)로 대체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부가 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신고 시 제출 서류 목록 등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리선 인프라 없는 지역의 시내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대체 제공(안 제2조제2항제1호에 라목 신설)

나. 시내전화를 대체하는 인터넷전화와 요금감면 대상서비스인 인터넷 전화를 구분하기 위한 단서 추가(안 제2조제2항제3호마목)

다. 보편적 의무 손실보전금 산정대상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전화 추가(안 제5조제1항제3의3호 신설)

라.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근거 마련(안 제10조)

마. 기간통신사업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인가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 바.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합병 등 인가·신고시 신고증명서 발급
(안 제20조 및 안 제22조)
- 사. 부가통신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 신고 시 발급된 ‘등록증 또는 신고
증명서’를 제출 서류 목록에서 삭제(안 제32조제1항제3호, 제2항제3호)
- 아. 스미싱 및 대포폰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시 해당 이용자에게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통지(제37조의5)와 이용자의 이의신청 방법
(제37조의6)에 관한 사항 규정
- 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에 대한 고유 식별번호 등록
·해제 등 사업자 관리 의무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제51조)
규정
- 차. 기간통신사업 신고에 관한 사무를 소속 기관의 장(중앙전파관리소장)
에게 위임(안 제6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인터넷전화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화서비스(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를 대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전기통신번호 없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2조제2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인터넷전화 서비스(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2조제2항제1호라목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대상에 대한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10조제3항 중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13조제3항 중 “제10조제1항제4호”를 “제10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병 인가”를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인가”로, “합병 인가신청서”를 “합병, 분할·분할합병 인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합병”을 “합병, 분할·분할합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합병 당사자”를 “합병, 분할·분할합병 당사자”로, “합병 관련”을 “합병, 분할·분할합병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을 “다음 각 목의”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합병”을 각각 “합병, 분할·분할합병”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 중 “합병”을 “합병, 분할·분할합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 하며, 제10항 중 “합병”을 “합병, 분할·분할합병”으로 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으로 한다.

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나.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다.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제22조제3항제2호 중 “합병”을 “합병, 분할·분할합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합병”을 “합병, 분할·분할합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합병”을 “합병, 분할·분할합병”으로 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으로 한다.

제32조 제1항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7조의5제1항제3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1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마.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제37조의6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제37조의6부터 제37조의11까지를 각각 제37조의7부터 제37조의12까지로 하고, 제3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6(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

서를 제공중지요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②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이하 “신고기기”라 한다)”를 “신고되었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이하 “차단기기”라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제3항 중 “신고기기”를 각각 “차단기기”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신고자가 해지를 요청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한 이용자가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 차단을 통보한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사용차단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제5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 차단된 통신단말장치의 이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37조의5 및 제37조의6을 준용한다.

제65조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 2.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신고의 접수·처리

별표 11 제2호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않은 경우”를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로 하고, 같은 호 코목의 근거법조문란 중 “법 제104조제2항제5호”를 “법 제104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500	3,000	5,000
-------	-------	-------

부 칙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 (생략)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유선전화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안의 전화 서비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1. ----- ----- -----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라. 인터넷전화 서비스: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화서비스(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를 대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전기통신번호 없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u>
1의2. 2. (생략)	1의2.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3. -----

요금감면 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가. ~ 라. (생략) <u>마. 인터넷전화 서비스</u> ③ ~ ⑤ (생략)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u>마. 인터넷전화 서비스(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같다)</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①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보편적 역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3의2. (생략) <u><신설></u> 4. (생략) ②·③ (생략)	제5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① ----- ----- ----- -----. 1. ~ 3의2. (현행과 같음) <u>3의3. 제2조제2항제1호라목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대상에 대한 인터넷전화 서비스</u>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등록증 등의 발급 등) ①·② (생략)	제10조(등록증 등의 발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④ (생 략)	③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 ----- --- 1. <u>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u> 2. <u>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u>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① · ② (생 략) ③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 략)	제13조(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제10조제1항제5호</u>----- ----- ----- ----- 1. ~ 4. (현행과 같음)
제20조(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 신청) ① (생 략)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u>합병</u>	제20조(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u>합병,</u>

<u>인가</u>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u>합병 인가신청서</u>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u>합병 계약서 사본</u> 2. <u>합병 당사자의 정관 및 합병 관련 증명서류</u> 3. <u>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4. <u>합병 당사자의 사업 현황</u> 5. <u>합병 후의 사업계획서</u> 6. ~ 7. (생략) ③ ~ ⑧ (생략)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수, <u>합병</u>, 매각, 최대	<u>분할 또는 분할합병 인가</u> ----- ----- <u>합병, 분할·분할합병 인가신청서</u> ----- ----- -----. 1. <u>합병, 분할·분할합병</u> ----- ----- 2. <u>합병, 분할·분할합병 당사자</u> ----- <u>합병, 분할·분할합병 관련</u> ----- 3. <u>다음 각 목의</u> ----- ----- ----- 가. <u>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u> 나. <u>분할로 설립되는 법인</u> 다. <u>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u> 4. <u>합병, 분할·분할합병</u> ----- ----- 5. <u>합병, 분할·분할합병</u> ----- ----- 6. ~ 7.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 ----- <u>합병, 분할·분할합</u>
---	--

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 합병,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 당사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양수·합병 또는 법인설립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병 -----

-----.

1. -----
--- 합병, 분할·분할합병 ---

2. -----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⑩ -----

----- 합병, 분할·분할합병 -----
----- 기간
통신사업자 등록증 또는 신고증

⑪ ~ ⑫ (생 략)	<u>명서를 발급</u>-----. ⑪ ~ ⑫ (현행과 같음)
제22조(양수 및 합병 등의 신고) ① ~ ② (생 략) ③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 략)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u>합병</u>신 고서 3. ~ 7.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 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 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 <u>합병</u>,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	제22조(양수 및 합병 등의 신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u>합병, 분할 · 분할합병</u>----- --- 3. ~ 7.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1. ----- --- <u>합병, 분할 · 분할합병</u>-----

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 당사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양수인, <u>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u>이나 <u>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u>,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양수·<u>합병</u> 또는 법인설립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u>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발급</u>하여야 한다. ⑥ (생략)	----- ----- ----- 2. ----- ---(----- <u>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u>이나 <u>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u>, <u>분할로 설립되는 법인</u>, <u>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u>이나 <u>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u>, - ----- --) ⑤ ----- ----- ----- <u>합병, 분할·분할합병</u> ----- ----- <u>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u>-----.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① (생략) 1. ~ 2. (생략) 3. <u>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u> ② (생략) 1. ~ 2. (생략) 3. <u>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u>	제32조(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제37조의5(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제37조의5(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① <u>법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공중지요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u> <u>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u> <u>2. 이의신청의 사유</u> <u>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u> ② <u>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u>
--	--

	<u>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③ <u>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u> ④ <u>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u>
<u>제37조의6 ~ 제37조의11 (생략)</u>	<u>제37조의7 ~ 제37조의12 (현행 제37조의6부터 제37조의11까지와 같음)</u>
제51조(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등) ①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를 설치	제51조(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등) ① ----- ----- ----- ----- ----- -----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간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u>신고된 통신단말장치</u>(이하 “<u>신고기기</u>”라 한다)의 고유식별번호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u>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u>”이라 한다)의 구축·운영 2. <u>신고기기</u>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조회 지원 3. (생략) ②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u>신고기기</u>에 대해서는 즉시 그 고유식별번호를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u>신고자가 해지를 요청하면</u> 즉시 그 등록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u><신 설></u>	----- -----. 1. ----- ----- ----- ----- <u>신고되었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이하 “차단기기”라 한다)</u>----- ----- ----- 2. <u>차단기기</u>----- ----- 3. (현행과 같음) ② ----- ----- ----- -- <u>차단기기</u>-----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 -----. 1. <u>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한</u>
--	---

<u><신 설></u> ③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u>신고기기</u>의 통신망 접속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u>신고기기</u>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차단하여야 한다. ④ (생 략) <u><신 설></u>	<u>이용자가 해지를 요청한 경우</u> 2. 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 차단을 통보한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사용차단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③ ----- ----- ----- ----- <u>차단기기</u> ----- ----- <u>차단기기</u> ----- -----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 차단된 통신단말장치에 <u>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37조의5 및 제37조의6을 준용한다.</u>
제65조(권한의 위임) (생 략) 1. (생 략) <u><신 설></u> 2. ~ 22. (생 략)	제65조(권한의 위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u>1의 2.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신고의 접수·처리</u> 2. ~ 2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6627